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31 선고 2017나748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31 선고 2017나748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4 선고 2016가단501458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피고, 항소인 C

변론 종결 2017. 5. 17.

판결 선고 2017. 5. 31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4. 선고 2016가단5014587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충청남도 서천군 D 전 233m²에 관하여, 제1심 공동피고 A영어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에 2015. 9. 30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영어조합법인에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5. 9. 30. 접수 제1384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- 제1심판결 제3쪽 11, 12행과 제6쪽 4행의 각 'F'을 'T'으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3쪽 제15, 16행의 '경료되어 있었고,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G 등에게 인수되었다'를 '경료되어 있었다'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7행까지 부분(1의 라항 부분)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
『라. 피고 회사는 2015. 9. 30.경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외에도 농협은행에 대하여 1억 9,800만 원(백만 원 이하 버림, 이하 같다), 기업은행에 대하여 7억 6,300만 원,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.』
-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 부분[3. 가. 1) 나) 부분]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『나) 피고 회사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
2015. 9. 30.경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은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 1억 9,800만 원,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억 원, 기업은행에 대한 7억 6,300만 원 등인 반면,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와 가액

14,994,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창고 합계 25,479,000원(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2012. 8. 17.경 기준 감정가액인 10,485,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으로, 피고의 매수금액인 1,750만 원을 그 가액으로 산정하더라도 적극재산의 합계는 32,494,000원으로 위 소극재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)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, 즉,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할 여지가 큰 점, ②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고 남은 피고 회사의 재산 가치는 피고 회사의 채무 규모에 비해 극히 적어 잔존 재산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돈을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채무 변제나 피고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,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,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미리

판사조운정

판사하세용